

유권자의 권리

유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
1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.
다음의 경우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:

-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
- 최소 18세
- 현재 거주지에 등록
-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아니며, 또한
- 법원에 의해 현재 정신적으로 투표 능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

2 이름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수 있는 권리. 유권자는 임시 투표 용지에 투표하게 됩니다. 선거 관리원이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투표는 집계에 포함됩니다.

3 이미 줄에 서있는 투표자인 경우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.

4 아무에게도 방해 받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.

5 이미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,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
유권자는 다음이 가능합니다:

투표소에서 선거 관리원에게 새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새 것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교환하거나 혹은 임시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6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본인이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투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.

7 California 내 모든 투표소에서 작성된 -우편-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.

8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. 본인의 선거구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.

9 선거 관리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. 또한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.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을 알지 못하면, 적절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유권자를 안내해야 합니다. 유권자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거 공무원은 답변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10 불법 또는 부정 선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. 신고는 선거 관리원이나 주 국무 장관실에 접수하면 됩니다.

🌐 웹사이트 www.sos.ca.gov

☎ 전화 (866) 575-1558

✉ 이메일 elections@sos.ca.gov

이 중 어떠한 권리라도 거부 당했다고 생각되시면, 주 국무 장관의 기밀 무료 유권자 상담 전화 (866) 575-1558으로 연락하십시오.